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5. 23.
시민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5월 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5년 5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33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1995년 5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과장 공우홍)

가. 제안이유

규격봉투 종류를 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폐기물수수료 부과·징수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과·징수 대상에 배출자를 포함시키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규격봉투의 종류에 특수규격봉투 및 30ℓ 봉투를 신설함.
(안 제14조, 제15조, 별표2, 별표3)
-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대상에 토지·건물의 소유자의 배출자를 포함시킴.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위반자에 대하여도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종전 14종에서 26종으로 확대함.
(안 별표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현행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주

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을 사용 편리하도록 고치고,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 제11조(종량제 실시) 2항에 의거 제14조 및 제15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써 쓰레기용기를 30리터 규격봉투(일반폐기물)와 50리터 규격봉투(특수폐기물)를 제작하는 신설조항과 봉투종류가 3종류로써 일반봉투는 일반가정에서 버리는 폐기물을 담는 봉투와 사업장에서 버리는 폐기물 봉투로 구분하고 색상별로 구별하도록 하였으며, 또 특수규격봉투는 일반가정과 사업장에서 버리는 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담는 봉투로 구분하였으며, 현행 규격봉투는 조례로 규격이 정하여져 있으나 개정안에는 규격이 삭제되어 제출된 안으로써 이유는 앞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용기)의 크기는 공업진흥청과 조달청의 협의로 단체표준규격을 개정하여 정한 것으로써 KS규격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조례에서 삭제된 것을 보고드리며, 조례 23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는 법 제63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투기자 즉, 종량제 제외대상자(다량배출자 또는, 건축폐채류 등 대형폐기물)의 배출자가 투기하였을 때 부과되는 내용을 추가 삽입하는 개정안과 제23조의 대형폐기물 품목의 부과기준을 14종에서 26종으로 확대 적용하여 수집운반수수료를 세분함으로 일반주민들이 혼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제출된 본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6
----------	-----

제출년월일 : 1995.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규격봉투 종류를 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제외 대상 일반폐기물수수료 부과·징수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과·징수 대상에 배출자를 포함시키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

효성을 제고하며,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 규격봉투의 종류에 특수규격봉투 및 30ℓ 봉투를 신설함.
(안 제14조, 안 제15조, 별표2, 별표3)
-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폐기물수수료 부과·징수 대상에 토지·건물의 소유자의 배출자를 포함 시킴(안 제23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위반자에 대하여도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을 종전 14종에서 26종으로 확대함. (안 별표6)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 동법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 나. 예산규칙: 해당없음
- 다. 합 의: 의견없음
- 라. 기 타: 개정조례안(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별표2중 제목 “규격봉투가격”을 “일반규격봉투가격”으로 하고, “20ℓ란” 다음에 “30ℓ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30ℓ	400원	420원
-----	------	------

“(일반규격봉투가격)” 다음에 “(특수규격봉투 가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수규격봉투 가격)

구 분	가 정 용	사 업 장 용
50ℓ	780원	820원

제14조의 제목 “규격봉투의 종류”를 “규격봉투의 종류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봉투로 구분한다.
- ②일반규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반가정용 봉투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반사업장용 봉투에 담는다.
- ③특수규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특수가정용봉투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특수사업장용 봉투에 담는다.
- ④공공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담는다.

제15조 제1호중 “규격봉투의 색깔은” 다음에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중”과 “현색” 다음에 “(반투명)”을 삽입하고, 동조 제2호중 “규격 및 용도”를 “용도”로 하고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3〉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15조 제2호 관련)

구 분	용 도
5ℓ	일반가정용
10ℓ	일반가정용, 공공용
20ℓ	일반가정 및 사업장용, 공공용
30ℓ	일반가정 및 사업장용
50ℓ	일반가정 및 사업장용, 특수가정 및 사업장용, 공공용
75ℓ	일반사업장용, 공공용
100ℓ	일반사업장용, 공공용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 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별표4를 삭제하고, 별표5 내지 별표8을 별표4 내지 별표7로 한다.

제17조 제1항중 “제15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5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KS규격 또는”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중 “별표5”를 “별표4”로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중 “별표6”을 “별표5”로 하고, 제3호중 “별표7”을 “별표6”으로 하며, 제4호중 “별표8”을 “별표7”로 하고, 별표6중 응접세트란 다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단위: 원)	비 고
침 대	1인 용	10,000	
	1인용 매트리스	5,000	
	2인 용	1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캐 비 넷		4,000	
화 일 캐 비 넷	4 단 이 상	3,000	
	3 단 이 하	2,000	
양 수 책 상		7,000	
편 수 책 상		4,000	
피 아 노		15,000	
울 겐		4,000	
쌀 통		3,000	
난 로		2,000	
선 품 기	가 정 용	1,500	
자 전 거	성인 및 아동용(두발)	3,000	
	아 동 용(세발)	2,000	
유 모 차		2,000	

별표 6중 하단(주)을 다음과 같이 하며

주> (1) 기타 특수규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은 m²당 5,100원 부과

(2) 열거된 품목에 유사한 품목은 열거 품목 수수료에 준하여 부과

동조 제2항중 “토지·건물의 소유자” 다음에 “또는 배출자”를 삽입한다.

제29조 제1항중 “법 제7조의”를 “법 제7조 및 제15조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장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 ①규격봉투는 가정용 봉투·사업장용 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가정용 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담고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신 설〉 〈신 설〉 제15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생략) 1. 규격봉투의 색깔은 가정용봉투는 흰색, 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색(주황)색, 공공용봉투는 옅은 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3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사양은 별표4와 같다. 4. 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하되 그 밀도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제15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생략) ② (생략) 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장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일반규격 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규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반가정용 봉투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반사업장용 봉투에 담는다. ③특수규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특수가정용 봉투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특수사업장용 봉투에 담는다. ④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담는다. 제15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현행과 같음) 1.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중(반투명), 2. 용도는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 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 ① 제15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KS 규격 또는.....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별표4

현행

제5장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제23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생략)

1. (생략)

2.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의 수집·운반 수수료 별표6과 같다.

3.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7과 같다.

4.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의 처리비는 별표8과 같다.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9조(과태료의 처분 통지서)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별표2〉 규격봉투 가격(제11조 제2항 관련)

구 분	가 정 용	사 업 장 용
5ℓ	70원	—
10ℓ	130원	—
20ℓ	250원	270원
	(신 설)	
50ℓ	620원	670원
75ℓ	—	1,000원
100ℓ	—	1,330원

〈신 설〉

〈별표3〉 봉투 용량별 규격 및 용도(제15조 제2호 관련)

구분	규격(가로×세로cm)	두께(mm)	용 도
5ℓ	26×31	0.020	가정용
10ℓ	33×40	0.020	가정용
20ℓ	41×49	0.025	가정용, 사업장용
50ℓ	56×67	0.030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
75ℓ	64×77	0.035	사업장용, 공공용
100ℓ	71×85	0.040	사업장용, 공공용

개정안

제5장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제23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별표5

3. 별표6

4. 별표7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배출자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9조(과태료의 처분 통지서)

.....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

〈별표2〉 규격봉투 가격(제11조 제2항 관련)

(일반규격봉투 가격)

구 분	가 정 용	사 업 장 용
5ℓ	70원	—
10ℓ	130원	—
20ℓ	250원	270원
30ℓ	400원	420원
50ℓ	620원	670원
75ℓ	—	1,000원
100ℓ	—	1,330원

(특수규격봉투 가격)

구 분	가 정 용	사 업 장 용
50ℓ	780원	820원

〈별표3〉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15조 제2호 관련)

구 분	용 도
5ℓ	일반가정용
10ℓ	일반가정용, 공공용
20ℓ	일반가정 및 사업장용, 공공용
30ℓ	일반가정 및 사업장용
50ℓ	일반가정 및 사업장용 특수가정 및 사업장용, 공공용
75ℓ	일반사업장용, 공공용
100ℓ	일반사업장용, 공공용

〈별표 4〉	현	행	개	경	안
18 이 봉투를 무기위한 부분임 cm	지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 (20ℓ) -가 정 용- 1. 재활용품가능품목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청소과 670-3375~7 (OO업체) ※이 봉투는 영등포구(OO동) 관할 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이 봉투를 무기위한 부분임 지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 (20ℓ) -공 공 용- 1. 이 봉투는 공동청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가정 및 사업장에서 이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 등 포 구 청 장 ※이 봉투는 영등포구 관할 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작 제〉		

- 사업장용 봉투는 “가정용” 대신 “사업장용”으로 표시
- 직영지역은 해당구청 표시만하고 대행지역은 구청과 업체명 동시 표시
- ※의 OO동은 대행업체별 수거지역 표시
- 여분의 길이 = $\frac{\text{가로길이}}{\pi} + 5\text{cm}$
- 묶는 부분에 표시한 점선은 제2모델로서 잘라내는 부분임.

현행				개정안			
〈별표7〉				〈별표6〉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비고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비고
	(생 략)				(현행과 같음)		
(신설)				침 대	1인용 1인용 매트리스 2인용 2인용 매트리스	10,000 5,000 15,000 8,000	
(신설)				캐 비 넷		4,000	
(신설)				화일캐비넷	4단이상 3단이하	3,000 2,000	
(신설)				양 수 책 상		7,000	
(신설)				편 수 책 상		4,000	
(신설)				피 아 노		15,000	
(신설)				울 겐		4,000	
(신설)				쌀 통		3,000	
(신설)				난 로		2,000	
(신설)				선 품 기	가정용	1,500	
(신설)				자 전 거	성인 및 아동용(두발) 아 동 용 (세발)	3,000 2,000	
(신설)				유 모 차		2,000	
(주)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주) 1)기타 특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은 m ² 당 5,100원 부과 2)열거된 품목에 유사한 품목은 열거 품목 수수료에 준하여 부과			